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

의안 번호	160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5. 6. 27
제안자 : 최광렬의원외5인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,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제명 띄어쓰기(안 제2조 별표1)

나. 본문중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“ 「 」 ”표기와 기타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3조 별표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(법제처
기획예산담당관실-639(2004.12.27)호)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,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명 띄어쓰기) 의회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,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제3조(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표시변경 등) 의회 규칙의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(「」)를 사용하고, 상위법령 등의 개·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, 그 내용은 별표2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명 띄어쓰기(제2조 관련)

구분	현행	개정안	비고
규칙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직제규칙	부산광역시√사하구의회√ 사무국직제√규칙	
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규칙	부산광역시√사하구의회√기√ 및√의원배지에√관한√규칙	
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	부산광역시√사하구의회√ 의원√공무국외여행√규칙	
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회의규칙	부산광역시√사하구의회√ 회의√규칙	
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	부산광역시√사하구의회√ 의원신분증√규칙	
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청원심사규칙	부산광역시√사하구의회√ 청원심사√규칙	

※ 비고 : √ 표시는 띄어쓰기 표시임

[별표 2]

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(제3조 관련)

구 분	조 례 명 (규칙,훈령,예규)	관 련 조·항·호	현 행	개 정 안	비 고	
규 칙	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사무국직제 규칙	제 4 조 제 2 항 중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	「부산광역시/사하구의회/위원회/조례」		
	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	제 10 조 중	사하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	「부산광역시/사하구의회/위원회/실비변상/조례」		
	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	제 1 조 · 제 14 조 제 2 항 중	지방자치법	「지방자치법」		
		제 7 조 제 4 항 중	--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---	--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---		
	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	제 1 조 중	지방자치법시행령	「지방자치법/시행령」		
		제 6 조 제 1 항 · 제 3 항 중	상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	상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	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삭제	
		제 16 조 중	지방자치법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회의규칙	「지방자치법」 「부산광역시/사하구의회/회의/규칙」		
		제 17 조 중	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 회의규칙	「부산광역시/사하구의회/위원회/조례」 「부산광역시/사하구의회/회의/규칙」		

※ 비 고 : √ 표시는 띄어쓰기 표시임